

##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 1. 21.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1월 14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3년 1월 14일
- 다. 상정일자 : 제9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2003. 1. 21)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세무2과장      영 세 동

#### 가. 제안이유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구세의 감면 사항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법인·협회 및 개인까지 포함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반면에 개인이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배제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금번 개정을 통하여 개인이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의 경우와 동일하게 재산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 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상위 법령의 제· 개정으로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법규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인용함. (안 제10조· 제14조 및 제24조)

- 도시계획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도시계획법시행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개정조례안은 2002. 12. 9일 행정자치부장관의 2003년도 구세감면조례표준안중개정안과 2003. 1. 4일 구세감면조례표준안중개정안 추가분이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첩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4조의 규정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되었으나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감면혜택이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여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유료노인복지시설과 동일한 감면혜택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안 제14조, 안 제24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제·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법규 명칭이 변경(도시계획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시행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유응봉 위원) : 부동산취득시에도 감면 되는가?

○ 답변요지(영세동 세무2과장)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감면대상임.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3. 1. 13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구세의 감면 사항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법인·협회 및 개인까지 포함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반면에 개인이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배제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금번 개정을 통하여 개인이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의 경우와 동일하게 재산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상위 법령의 제·개정으로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법규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인용함.(안 제10조·제14조 및 제24조)

- (1) 도시계획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2) 도시계획법시행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3)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 3. 근거법령

가.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38호) 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184조

나. 지방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49호) 제79조 및 제136조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필요성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2.12.20~2003.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득함.

[행자부 세제13400-1384(2002.12.4)호, 서울시세정13430-1308(2002.12.9)호 및 서울시세정13430-11(2003.1.4)호]

다. 2003.1.13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로 한다.

제14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에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한다.

제24조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b>                      노인복지법에 의한 <u>유료노인복지시설</u>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u>유료노인복지시설</u>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p>	<p><b>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b>                      ----- <u>노인복지시설</u> -----                      ----- <u>노인복지시설</u> -----                      -----                      -----                      -----</p>
<p><b>제10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b>                      ① <u>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u>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b>제10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b>                      ① <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u>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                      -----                      -----</p>
<p>② <u>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u>에 의한 <u>도시계획시설</u>로서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그 해당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p>	<p>② <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u>에 의한 <u>도시계획시설</u>로서 동법 제32조 -----                      -----                      -----                      -----                      -----</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4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u>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 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u>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p> <p>1.~2.(생략)</p>	<p>제14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u>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u></p> <p>-----</p> <p>-----</p> <p>-----</p> <p>-----</p> <p>1.~2.(현행과 같음)</p>
<p>제24조(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u>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u>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2.(생략)</p>	<p>제24조(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u>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u></p> <p>-----</p> <p>-----</p> <p>-----</p> <p>-----</p> <p>-----</p> <p>-----</p> <p>-----</p> <p>1.~2.(현행과 같음)</p>